

수 신 : 회원사 대표이사
참 조 :
제 목 : 「굴착공사 신고제도」 안내

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굴착공사 관련 지하매설물 파손 등 사고 예방을 위해 「굴착공사 신고제도」 홍보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제도 개요

- 토지의 굴착공사시 사전에 공사계획 통보 후 굴착 필요
- ※ 근거법률 :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등

나. 대 상

- 도시가스사업 허가 지역,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지역, 고압가스 배관 매설 지역 등

다. 질 차

-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시작 24시간 전까지 공사계획 신고
- 발주자명, 굴착공사 회사명 및 담당자, 공사위치, 굴착길이 및 공사예정일자 등

홈페이지	모바일앱	콜센터
www.eocs.or.kr	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앱	1644-0001

- 굴착현장 배관 등 확인·표시 및 굴착공사 개시

라. 주의사항

- 굴착 미신고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재 부과
- ※ 근거법률 :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등

붙 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회장 강 성



담당자 이정민 대리 이원석 회원지원실장 유성규 사무처장 정상현
시행 전건협 전남 제 288 호 (2026. 5. 11.)

우 [58567]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(전문건설회관 10층) <http://jeonnam.kosca.or.kr>
전화 061-288-8400 전송 061-288-8477~8 / 전자우편 mini@kosca.or.kr